

추가약정서(글로벌 팩토링용) 개정 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약정서명	추가약정서(글로벌팩토링용)(구 외환은행)	추가약정서(글로벌팩토링용)	전산통합에 따라 약정서명에 (구 외환은행) 명칭 삭제
약정서 內 타 약정서명	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서(구 외환은행)	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서	전산통합에 따라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
문구 정비	주식회사 하나은행("갑") ○○○○주식회사("을")	주식회사 하나은행("은행") ○○○○주식회사("회사")	갑을 표현 수정
내용 개정	<p>제2조 공급업체에 적용할 할인율</p> <p>① 할인율</p> <p>1. 할인율 : 내국수입유산스LIBOR + _____ %</p> <p>2. 내국수입유산스 LIBOR는 매입일 직전영업 일 영국 런던 오전 11시 IBA(ICE Benchmark Administration)가 고시하는 1월, 2월, 3월, 6월의 LIBOR를 기준으로 여신기간(해당일수)의 전·후 구간에 대한 LIBOR를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.</p> <p>* 보간법 : 기준상품의 시장 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 유통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</p>	<p>제2조 공급업체에 적용할 할인율</p> <p>① 할인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_____ %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()%</p>	전산통합에 따라 대출금리 체계 변경내용 반영

2. 개정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: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, 연장 등 약정분부터 적용